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2. 적용대상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상품

3.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해당월 주보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나.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주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연간 총 주보험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며, 주보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4. 기타

가.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기타 사항은 주보험에 준함.